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09.07(금)11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문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(안 제4조)
- 나. 수출중소기업의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(안 제5조)
- 다.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 (안 제6조)
- 라.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휘·감독 및 조치 규정(안 제8조)
- 마.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경비보조 규정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'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